

식품·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보고인	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		휴대전화		
영업소	명칭(상호)	영업등록번호		
	소재지			
제품정보	식품의 유형	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		
	제품명			
	소비기한	제조일부터	일(월, 년)	
	품질유지기한	제조일부터	일(월, 년)	
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※ 뒤쪽에 적습니다.			
	용도·용법			
	보관방법 및 포장재질			
	포장방법 및 포장단위			
	성상			
	위탁생산 여부		[]에	[]아니오
	· 수탁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: · 수탁 영업소의 영업의 종류: · 위탁제조공정:			
	품목의 특성			
	· 고열량·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		[]에	[]아니오
·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		[]에	[]아니오	
·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		[]에	[]아니오	
[]영양성분 조절제품 []경도 조절제품 []점도조절 제품 []해당 없음				
·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		[]에	[]아니오	
·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		[]에	[]아니오	
· 살균·멸균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		[]비살균 []살균 []멸균		
·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		[]에	[]아니오	
기타				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(식품첨가물)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.

보고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

- 제조방법설명서 1부
-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·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합니다) 1부
-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(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합니다) 1부

1.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

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2. 식품의 영양성분

※ 작성방법

가. '내용량'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① 총 내용량당 [] ② 100(g 또는 mL)당 [] ③ 단위 내용량당 []

나. 가목에 따라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'총 내용량' 또는 '단위 내용량'을 적습니다.

1) ① 또는 ② 방법으로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'총 내용량'만 적습니다.

2) ③ 방법으로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'총 내용량'과 '단위 내용량'을 모두 적습니다.

번호	영양성분	내용량	번호	영양성분	내용량
1	열량	kcal	6	트랜스지방	g
2	나트륨	mg	7	포화지방	g
3	탄수화물	g	8	콜레스테롤	mg
4	당류	g	9	단백질	g
5	지방	g	10	그 밖의 영양성분	
총 내용량: (g 또는 mL)			단위 내용량: (g 또는 mL)		

유의사항

1.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2. 영업자는 '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'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.
3. '배합비율'란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만 적습니다.
4. '식품의 영양성분'란은 앞쪽의 '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'란에 '예'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.
5.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응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을 뒤쪽 제1호의 원재료명 및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에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품목제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